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-126호

반포주공1단지(1,2,4주구)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고시

우리구 신반포로 45(반포동 810번지) 일대 지상 반포주공1단지 (1,2,4주구)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09. 28.

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사업

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반포주공1단지(1,2,4주구)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

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370,484.0m²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반포주공1단지(1,2,4주구) 주택재건축
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오득천)

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3길 8, 6층 614호
(반포동, 반포프라자종합상가)
(☎ 02-536-1240)
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
5. 사업시행인가일 : 2017. 09. 27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
관리명세 : 해당없음

7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
관한사항

가. 대지면적 : 252,588.0㎡ 나. 건 폐 율 : 26.68%

다. 용 적 률 : 293.11% 라. 최고높이 : 109.8m

마.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·복리시설, 근린생활시설
및 판매시설(주구중심), 공공업무시설(공공청사) 등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: 지하4층 / 지상35층, 아파트
56개동, 5,335세대

공 급 구 분	주택의 형 태	세대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 기준)			
			60㎡ 이하	60㎡ 초과 ~ 85㎡ 이하	85㎡ 초과 ~ 115㎡ 이하	115㎡ 초과
계	아파트	5,335	1,801	1,472	—	2,062
분 양	아파트	5,124	1,590	1,472	—	2,062
임 대 (재건축소형주택)	아파트	211	211	—	—	—

9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
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		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			
종류	규모(㎡)	종류	규모(㎡)	시행자	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
도로	52,722.0	도로	26,985.0	반포주공1단지(1,2,4주구)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	시행자(조합) 부담 / 새로이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 귀속
공원	15,603.0	공원 (소공원, 문화공원)	52,408.0	반포주공1단지(1,2,4주구)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	시행자(조합) 부담 / 새로이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 귀속
녹지	19,914.0	녹지 (완충녹지)	12,150.0	반포주공1단지(1,2,4주구)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	시행자(조합) 부담 / 새로이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 귀속
하천	6,258.0	학교	22,892.0	반포주공1단지(1,2,4주구)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	시행자(조합) 부담 / 새로이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 귀속
공공 청사	3,461.0	공공청사1	3,461.0	반포주공1단지(1,2,4주구)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	존치
		공공청사2	1,201.0	반포주공1단지(1,2,4주구)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	시행자(조합) 부담 / 새로이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 귀속

10. 의제 처리사항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2조제1항 각 호의 해당 관계법규

(문화공원2, 지하차도는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제86조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
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의제 처리 제외)

11.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 02-2155-7341)에 비치 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